

韓・中間, 南・北韓間の 農業協力 - 現況과 展望 -

崔 榮 一

I. 序 論

II. 21世紀 韓國의 食糧需給 展望과 問題點

III. 韓中間, 南北韓間の 農産物 交易現況

IV. 韓中間, 南北韓間の 農業協力方案

V. 結 論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韓國과 中國은 歴史的・地政學的인 면에 있어서 상호 동질성을 공유해 왔다. 더우기 食生活에 있어서의 類似性과 韓國의 食糧需給 不均衡은 食糧수급에 있어서 對中國依存度를 날로 심화시켜 옴으로서 食糧 安保 차원에서의 수입선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韓

中修交 이전부터 제 3국을 통한 中國 農産物의 輸入은 서서히 증가되어 왔는데, 수교 이후로는 빈도면에서나 물량면에서 중국 농산물의 수입은 중대일로에 있다.

한편 北韓은 우리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절 이념적인 장벽에 의해 상호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나, 공산 종주국인 蘇聯이 해체되고 中國이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의 벽을 뛰어 넘게 되자 북한으로서도 개혁개방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구나 계속되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¹⁾은 급기야 외부를 향하여 식량을 구걸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됨으로써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에 적지않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韓國의 입장에서는 食糧自給率이 어느새 30% 이하로 떨어진 농업현실²⁾에 비추어 식량의 주수입선인 중국과의 농업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장차 통일을 염두에 둔 북한과의 농업협력은 經濟的 協力關係 구축을 통한 段階的 統合의 실현을 위하여 지금부터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WTO가 합의 논리에 의해 強大國의 이익에 편향되고, EEA(유럽경제지역)³⁾,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地域經濟協力體가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東北亞地域의 經濟

1) 北韓은 '95년 7월과 8월 세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북한전역의 75%가 피해를 입어 5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北韓政府의 통계에 의하면 年間 소요곡물은 763만 9천톤인데 홍수전에 예상한 물 수확량은 필요량보다도 197만 4천톤이 모자란 상태였다. 북한정부는 이번 수해로 곡물 190만 1천톤(쌀 108만3천톤, 옥수수 81만 8천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했다. (『國民日報』, 1995. 9. 13.)

2) 1994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잠정치)은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7.6%임(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95).

3) EEA(유럽經濟地域)는 EU 12개국과 EFTA(유럽自由貿易聯合) 6개국이 통합하여 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음.

協力は 생존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⁴⁾ 아직도 남북한간에는 核問題 등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최근 北米間の 협상, 金日成의 사망으로 인한 開放派의 浮上 등을 고려할 때 한중수교와 함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好機를 맞이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東北亞의 정치경제 발전과 안정을 위해 우리는 보다 積極的인 經濟交流協力事業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때다.⁵⁾

본 연구의 목적은 21世紀에 대비한 基礎食糧의 安定的인 確保方案 연구이다. 따라서 장차 예상되는 食糧武器化에 대비하여, 또한 南北韓의 統一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韓國・中國・北韓 3국의 농산물교역현황을 분석해 본 후에, 3국간의 바람직한 農業協力方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研究의 方法 및 內容

1) 研究의 方法

韓國의 農政과 農業現況이 1945년 해방 이후 부단히 변모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中國과 北韓도 변천을 거듭해 왔다. 3국간의 농업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3국간의 農產物 交易現況과 特性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이로써 農產物交易 推移에 대한 豫測도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3국간의 農產物交易現況을 연구한

4) 1995년 11월 19일 오사카 APEC會議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日本, 中國, 臺灣등이 농업분야의 취약성을 들어 국내시장 완전개방을 위한 「보고르 宣言(1994.11)」에 약간의 例外措置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朝鮮日報』, 1995. 11. 16.)

5) 同旨, 金雲根, “南北韓間, 韓中間의 農產物交易現況과 展望”, 『農村經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94. 12., pp. 85-86.

각종의 국내외 통계자료, 단행본, 정기간행물, 논문 등을 분석하여 그 흐름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3국간의 農業協力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한편 통계자료의 사용범위는 가능한 한 199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99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2) 研究의 內容

사회주의 국가의 통계자료는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제 3국과의 輸出入에 투영된 交易量을 역추적하여 믿을만한 통계치를 산출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연구도 統一院과 최근의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연구자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1世紀 韓國의 安定的인 食糧確保를 위한 方案으로서 東北亞 3국인 韓國·中國·北韓의 農業協力方案에 대하여 집중연구코자 하였는데, 3국간의 農產物 交易現況 分析을 농업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基礎資料로 활용하였다.

II. 21世紀 韓國의 食糧需給 展望과 問題點

1. 食糧需要 및 生産豫測

21세기에 진입한 한국의 식량사정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UR에서 논의된바 있는 關稅化가 수용되고 關稅相當值(TE)⁶⁾가 2000년까지 30%정도 삭감될 경우, 쌀소비량은 1992년의

6) 關稅相當值(Tariff Equivalent) : 國별, 품목별 기준년도의 國內價格(도매가격)과 國際價格(당사국 또는 인접국의 CIF)의 차이를 백분비한 수치. 예를 들어 1986-88 연평균 국산콩 도매가격이 1,000원/kg이고 수입가격(CIF)이 250원/kg이면, TE는

< 表-1 > 主要農産物 需給 展望

단위 : M/T

구 분	1992		1995		2001	
	생 산	소 비	생 산	소 비	생 산	소 비
식량작물						
미곡	5480	5405	5405	5405	5069	5069
보리	495	448	475	433	435	390
콩	220	1132	217	1345	210	1377
옥수수	116	5903	109	6509	105	8162
팥	25	38	25	39	23	39
녹두	7	8	7	8	7	8
감자	486	536	445	540	363	556
고구마	528	513	519	490	502	414
축산물						
쇠고기	89	188	86	225	80	303
돼지고기	608	608	724	724	955	955
닭고기	193	193	228	228	303	303
계란	441	441	506	506	644	644
우유	2298	2298	2971	2971	4557	4557

※ 2001년까지 關稅相當値의 30%까지 감소될 경우임.

資 料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農漁
村發展部門計劃(試案)』, 1991. 5.

300% $\{(1,000 - 250) / 250 * 100\}$ 가 된다. 한국이 開途國으로 분류되어 履行期間 10년간 TE 10%를 減縮한다는 것은 1995년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00% 부과하고, 이후 매년 關稅率을 3%씩 낮추어 2004년에는 關稅를 270% 부과(300%의 10%인 30% 감축)하는 것을 말함.(韓國農村經濟研究院, 『UR 妥結에 따른 農畜産物市場 開放의 波及影響 分析』, 1993. 12., p.4.)

5,405천톤에서 2001년에는 5,069톤으로 감소하는 대신, 축산물 소비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表-1> 참조).

統一韓國을 예상할 경우 1990년기준 인구가 64.6백만명으로 계산되고, 2020년에는 83.1백만명으로 추정되어 남한인구 예측치의 1.6배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이때 짬이면 북한의 食品消費構造도 남한과 비슷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南北統合의 경우 식량수요는 남한의 수요예측치보다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南北統一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현재 북한지역에서의 생산량 수준인 쌀 201만톤, 옥수수 240만톤, 두류와 잡곡 50만톤 정도가 남한의 총생산량에 추가될 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에서는 쌀생산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지역에서는 옥수수, 서류, 잡곡 등의 생산량이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⁷⁾

2. 食糧自給率 低調와 관련한 問題點

우리나라 食糧作物의 自給率は 사료용 곡물까지 합할 경우 1980년의 56.0%에서 계속 하락하여 1994년에는 27.6%⁸⁾까지 떨어졌다(<表-2> 참조). 우리나라 국민의 主食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은 自給段階를 벗어나 최근에 構造的 過剩기미까지 보이고 있는 반면⁹⁾, 밀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용 곡물 및 식용과 사료용을

7) 大統領諮問21世紀委員會(委員長 李相禹), 『21世紀 韓國經濟의 展望과 主要對應課題(最終報告書)』, 1991.11., pp.410-411. 참조.

8) 사료용을 제외할 경우의 1994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52.8%임.

9) 2004년의 食糧自給率は 목표(96%)보다 7%가 하락한 89%에 불과하여 2004년에는 義務輸入量(4%)을 제외한 7%가량(240만섬)을 追加導入해야 한다는 최근의 연구보고가 있다. (金雲根, 『쌀 需給展望과 政策課題』,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95. 11. 12.)

점한 豆類의 자급율도 급격히 떨어져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의 이러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 수준은 일부 도시국가들 제외하고는 현재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데, 향후의 농산물시장 개방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더욱 떨어질 여지가 많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추정에 의하면 2001년에도 쌀, 보리쌀, 고구마 등은 자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나, 밀은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사료곡인 옥수수과 豆類는 자급율이 각각 1.3% 및 16.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畜産物의 경우에도 주로 導入飼料穀에 의존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는 자급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쇠고기의 자급율은 26.3%로 떨어져 2001년의 쇠고기 도입량은 223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表-3> 참조).

그러나 쌀의 경우에도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에서의 關稅化 猶豫期間(10년)이 경과하고 最小市場接近(MMA)¹⁰⁾ 이행 최종년도 이후로는 자급율이 떨어질 소지가 있다.¹¹⁾

10) 最小市場接近(Minimum Market Access) : 기준연도에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한 市場接近保障으로서, 기준연도의 연평균 국내 소비량의 일정률이 현행 관세율로 수입되는데 대하여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은 쌀에서 MMA를 1995년에 기준연도 소비량의 1%를 보장하고, 1999년 2%까지 매년 0.25% 포인트씩 증량하고, 2000년의 2%에서 2004년의 4%까지 0.5% 포인트씩 증량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11) UR協商결과 채택된 WTO 農業協定(Agreement on Agriculture : 총 21개 條文과 5개의 附屬書로 구성)에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하여 협정문부속서 5B항에 의한 일부 特別待遇條項의 적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10년간 關稅化를 猶豫하고 10년차에 연장여부 再協商 ②最小市場接近은 許容하되 이행 최초년도에 1%에서 시작하여 5년째 2%, 6년째에 2%에서 시작하여 최종년도에 4%로 増量 ③유예기간 연장문제를 재협상하는 경우 한국은 追加讓步를 해야 하며, 관세화하게 되는 경우 관세화 적용 최초년도의 관세상당치는 기준년도 관세상당치로부터 10% 낮은

< 表-2 > 우리나라 食糧作物의 自給率 推移

단위 : %

년 도	전 체	쌀	보 리	밀	옥수수	콩	서 류
1980	56.0 (69.6)	95.1 (95.1)	57.6 (62.2)	4.8 (4.8)	5.9 (27.1)	35.1 (64.3)	10.0 (111.2)
1985	48.4 (71.6)	103.3 (103.3)	63.7 (89.6)	0.4 (0.5)	4.1 (15.5)	22.5 (62.7)	100.0 (111.1)
1986	44.5 (68.1)	96.9 (96.9)	82.4 (94.2)	0.2 (0.2)	3.5 (13.1)	18.8 (60.5)	100.0 (111.2)
1987	41.0 (66.5)	99.8 (99.8)	97.2 (98.1)	0.1 (0.1)	2.4 (8.8)	16.2 (54.7)	100.0 (112.7)
1988	39.6 (65.3)	97.9 (97.9)	119.4 (119.5)	0.1 (0.1)	2.6 (9.6)	15.6 (53.4)	97.7 (110.1)
1989	43.0 (70.8)	108.1 (108.1)	114.2 (118.9)	0.1 (0.1)	1.8 (7.4)	19.4 (59.5)	98.0 (108.5)
1990	43.1 (70.3)	108.3 (108.3)	97.4 (97.4)	0.05 (0.05)	1.9 (8.2)	20.1 (64.9)	95.6 (101.2)
1991	37.6 (64.1)	102.3 (102.3)	74.3 (74.3)	0.02 (0.05)	2.2 (7.4)	19.4 (58.7)	95.9 (106.0)
1992	34.1 (60.7)	97.5 (97.5)	82.6 (82.6)	0.02 (0.05)	1.2 (7.4)	12.2 (50.6)	103.4 (115.6)
1993	33.9 (61.4)	96.8 (96.8)	77.2 (77.2)	0.03 (0.05)	1.2 (5.6)	13.8 (48.9)	99.6 (110.8)
1994	27.6 (52.8)	87.7 (87.7)	48.3 (48.3)	0.03 (0.09)	1.4 (4.8)	12.6 (41.1)	93.5 (103.2)

※ ()안은 사료용을 제외할 경우의 자급율이며, 1994년은 잠정치임.

資 料 : 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2., 1995.

南北統一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북한의 일인당 식량소비량의 증가 및 식생활패턴의 高級化가 진행됨으로써 식량자급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쌀 부족량은 남한지역의 쌀 생산증가로 어느 정도 보충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북한지역의 옥수수나 잡곡생산의 증가로 남한지역의 飼料穀 導入量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리라 전망된다.¹²⁾

< 表-3 > 우리나라의 食糧自給率 推移 및 展望

단위 : %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1*
양 곡	93.9	80.5	73.1	56.0	48.4	43.0	-	-
쌀	100.7	93.6	94.6	95.1	103.3	108.3	100.0	100.0
보 리 쌀	-	106.3	92.0	57.6	63.7	96.1	109.6	111.4
밀	27.0	15.4	5.7	4.8	0.4	0.1	0.0	0.0
옥 수 수	36.1	18.9	8.3	5.9	4.1	1.9	1.7	1.3
두 류	86.1	85.8	35.1	22.5	20.1	19.4	17.9	16.9
서 류	100.0	100.0	100.0	100.0	100.0	95.6	93.7	89.2
기 타	100.0	96.9	100.0	89.8	11.6	13.9	-	-
쇠 고 기	100.0	100.0	100.0	93.1	96.1	52.5	38.3	26.3
배합사료원료	-	37.0	54.0	41.0	35.0	27.0	-	-

※ *는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推定值임.

資 料 : 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91.

12) 21世紀委員會는 食糧自給率提高를 위한 5가지 課題를 선정했다 : ①食糧自給率의 適正水準 維持 ②優良農地의 農業의 利用 ③國內資源 條件과 調和된 食生活 誘導 ④食品加工産業과 農業生産과의 連繫 ⑤南北統一을 대비한 쌀 生産基盤의 維持(21世紀委員會, 前掲書, pp.412-431).

Ⅲ. 韓中間, 南北韓間의 農産物 交易現況

1. 韓中間의 農産物 交易現況

韓中間의 交易은 수교 이전에도 홍콩 등을 통한 間接交易 형태로 크게 증가하여 왔는데, 1984년까지는 교역규모가 5억달러도 되지 않았으나 중국의 개방화와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등에 힘입어 한중교역은 수교 직전인 1991년에 이미 58억불에 달하였다.

1992년 8월 한중간 正式國交가 수립되면서 교역액은 1992년 82억불, 1993에는 90억불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도 점차 흑자로 전환되어 1993년에는 12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1994년 한중간의 교역규모는 116억불로서 수교 2년만에 1백억불을 넘어 섰다. 이에 따라 中國은 미국, 일본에 이어 이미 우리나라의 3대 交易對象國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측에서도 한국이 6대 交易對象國인 점은 양국간의 경제적 긴밀도를 말해주고 있다.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짧은 기간에 이처럼 급증한 것은 양국의 産業構造가 相互補完的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상품을 수출한 데 비해 중국은 주로 1차 상품과 노동 집약적 상품을 우리에게 수출하였다.¹³⁾

한편 韓國의 대중국 農林水産物 교역규모는 1988년 2억 7천만불에서 1994년에는 12억 6천만불로 4.7배나 증가했다(<表-4> 참조). 그러나 이 중 한국의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출은 양국교역에 있어서 무시할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表-5> 참조).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988년 2억 4천만불에서 1994년 11억 2천만불로

13) 金雲根, "南北韓間, 韓中間의 農産物 交易現況과 展望", 『農村經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94. 12., pp.89-92.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表-4> 참조).

農林水産 分野에서 중국은 한국의 輸入市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輸入管理 方案과 수출증대를 통한 貿易收支 改善方案이다.

< 表-4 > 韓國의 對中國 農林水産物 交易推移

단위 : 백만불

연 도	수 출	수 입	교역액(수입+수출)	무역수지
1988	15	256	271	-241
1989	22	347	369	-325
1990	13	418	431	-405
1991	13	823	836	-810
1992	13	1,080	1093	-1067
1993	35	1,055	1090	-1020
1994	70	1,195	1265	-1125

資 料 : 農林水産部, 『통상자료』 및 『농업통상소식』, 1990., 1991., 1992., 1993., 1994.

한국은 70년대 후반에 들면서 농림수산물의 수입비중이 점차 커졌으며 농산물 수입의 대부분을 美國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수입 농산물 중 미국산의 비중은 1980년대초 50% 수준에서 1980년대말에는 43%로 감소하였고, 반면 한국이 中國으로부터 수입한 농림수산물의 비중은 1989년 6.1%에서 1993년 13.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입 선 전환품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료용 곡물이며, 그 가운데서도 옥

수수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이다. 한중간의 교역이 활성화된 1993년의 농림수산물 교역을 살펴보면, 옥수수의 수입이 6억 1천만불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그밖에 대두박, 면실유박, 밀기울 등 기타사료 수입이 8천만불로 옥수수와 사료곡물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65%에 이르렀다.

14)

< 表-5 > 韓國의 年度別 對中國 農林水産物 輸出入 動向

단위 : 백만불, %

구 분		연 도 별			증 감 률	
		1992	1993	1994	93/92	94/93
수출	국가전체	4492.8	5151.0	6203.0	14.7	20.4
	농림수산물	13.4	34.6	69.9	158.2	102.0
	농 산 물	4.5	6.7	12.2	48.9	82.1
	축 산 물	0.7	0.1	0.1	▶85.7	0
	임 산 물	7.6	18.2	39.2	139.5	115.1
	수 산 물	0.6	9.5	18.5	-	94.7
수입	국가전체	3724.6	3929.0	5463.0	5.5	39.0
	농림수산물	1079.6	1055.0	1194.7	▶ 2.3	13.2
	농 산 물	954.7	906.2	932.7	▶ 5.1	2.9
	축 산 물	38.0	29.3	37.2	▶22.9	27.0
	임 산 물	46.7	74.8	112.9	60.2	50.1
	수 산 물	40.2	44.7	111.8	11.2	150.1
무역	국가전체	769.9	1222.0	740.0	59.1	▶60.6
수지	농림수산물	▶1066.2	▶1020.4	▶1124.8	▶ 4.3	10.2

資 料 : 農水産物流通公社, 『業務便覽』, 1995. 참조하여 작성.

14) 農林水産部 국제농업국,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1995. 11., p.90. 참조.

사료용 곡물의 수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의 價格安定用(備蓄用) 農産物 수입을 들 수 있다. 가격안정용 수입농산물은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녹두, 팥 등으로 전체 수입액의 약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¹⁵⁾

<表-6>에 열거된 중국산 수입농산물중 사료용곡물과 가격안정용 비축농산물을 제외하면 한약재, 고사리 등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 30여 품목의 농림수산물이 남게 되는데, 이들의 수입비중은 25%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으나(1993년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3억불 정도로서 품목당 평균 1천만불 수준에 불과¹⁶⁾)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옥수수과 사료곡물 등의 수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 품목은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 어디에서든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들이고, 또 지리적으로 가깝고 품질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중국산이 수입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수입선은 價格 및 品質 條件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30여 품목 중 수산물과 일부 임산물(고사리,

15) 價格安定을 위한 이들 품목의 수입은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인 農水産物流通公社가 수행해 오고 있음.

16) 이들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한약재(42), 당면(11), 고사리(11), 녹용(10), 표고버섯(1), 매주(0.2), 은행(2), 도토리(2), 사향(4), 오리고기(2), 파(2), 감초(8) 와 삼치, 피조개, 조기, 꿀뱅이통조림 등의 수산물(45) 및 나무젓가락, 원목 등의 임산물임(팔호안은 1993년도 수입액으로서 단위는 백만불). 資料 : 農林水産部 국제협력국, 前掲書 참조.

17) 중국산옥수수의 수입이 1993년의 611백만불에서 1994년에 486백만불로 줄어든 것이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는 小麥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飼料用小麥 수요가 옥수수로 대체된 데다가 식량사정 악화로 인한 中國의 穀物輸出 금수조치 등의 상황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옥수수의 수입선이 전환되었기 때문임. 1995년 3월 현재 옥수수의 수입선은 거의 美國으로 전환되어 중국산옥수수의 수입은 대중국 농림수산물 총수입액의 2.1%에 그치고 있으나 상황변동의 소지가 많음.

< 表-6 > 韓國의 對中國 農林水産物 輸入動向(1994년)

단위 : 백만불

구 분	수입액	품 목	비 고
농산물	932.7	대두박, 참깨, 기타한약재, 면실유박, 당면, 팥, 에틸알코올, 옥수수, 마늘, (조물제품, 고추, 들깨, 기타채소, 땅콩, 동유, 기타소오스제품, 수수, 기타버섯, 파, 감초, 고구마전분, 토마토, 사탕수수당, 기타과실, 기타식물성재료, 설탕박, 양송이, 계피, 복숭아, 전분박, 과실혼합물, 기타조제식료품, 밀리트, 기타식물성액즙, 기타감귤류, 당근, 생강, 딸기, 사료첨가제, 기타식물성점질물, 채소종자, 강남콩, 기타파스파, 고량주, 용안육, 원지, 기타사료, 난초, 기타음료, 소두구, 채종·콜자씨박, 염교, 녹두, 리큐르, 양배추, 사인, 밀글루우텐, 무, 기타농세공품, 산조인, 보리, 메밀, 기타채유종실)	63종
축산물	37.2	늑용, (오리고기, 버터조제품, 기타육류, 동물사체, 육류수우프, 식용새집, 동물채장, 조란)	9종
임산물	112.9	침·삭편상의 목재, 수지류, 고사리, 합판, (기타제제품, 기타목제품, 화강암, 화강암제품, 도토리, 잣가락, 대나무제품, 깔판류, 기타원목, 이쑤시개, 부채, 목탄, 성형목재, 기타편조물제품, 기타목재식탁용품, 목제품구, 목재를, 쥘뿌리, 송이버섯, 기타석제품, 파티클보드, 기타단판, 표고버섯, 침엽수제제품, 건축용목제품)	29종
수산물	111.8	피조개, 문어, (기타어류, 기타연체동물, 복어, 개아지살, 바지락, 갈치, 미꾸라지, 조기, 봉장어, 어란, 서대, 명태, 오징어, 기타게, 지렁이, 삼치, 농어, 새우, 재첩, 가리비과조개, 기타갑치, 해파리, 기타동물성생산물)	25종
계	1194.7		126종

※ ()안의 품목은 총수입액이 천만불 미만인 품목임.

資 料 : 『農林水産物 輸出入動向』, 農林水産部 국제농업국, 1995.11.

도토리, 표고버섯 등)을 제외한 20여 품목의 농축산물과 산림 부산물인데, 이들 품목은 다시 輸入自由化품목과 輸入制限품목으로 구분되고, 수입제한품목의 경우는 關稅化에 의한 고율관세 부과로 수입이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깨, 고추, 땅콩, 녹두, 팥 등의 수입제한 품목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에 의한 비축의 필요성 때문이었고, 이들 품목의 경우도 정부에 의해 수입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관리에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약재와 같은 극히 일부의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2. 南北韓間의 農産物 交易現況

南北韓間의 交易은 1988년 7월 對北韓 交易의 문호를 개방¹⁸⁾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남북한간의 교역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南北交流에 관한 法律』¹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8년 對北 經濟開放措置 이후 1994년까지 搬入承認된 북한 물자는 802,356천불로서 이 중 農産物은 99,969천불로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水産物은

18) 1988년 7월 7일의 소위 『7.7 특별선언』.

19) 南北交易과 관련하여는 동법률·시행령·시행규칙 외에도 南北協力基金法, 對北投資 등에 관한 外國換管理指針, 南北交易物品 通關要領 등이 있고, 동법률 제 26조에 의거 對外貿易法 등 다른 법률을 準用하게 되어 있으며, 民族內部去來로 인정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이 면제됨.

50,539천불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搬入承認額 대비 搬入額을 살펴보면 승인액의 81.5%인 653,982불이 搬入²⁰⁾되었는데, 농산물 반입액은 42,115천불로 반입승인액의 42.1%, 수산물은 12,305천불로 24.3%의 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表-7> 참조).

반입 농산물 중 대표적인 품목은 감자, 한약재, 호두, 버섯류, 견고추, 고사리류 등이며, 수산물은 냉동·냉장명태, 냉동홍어, 냉동갈치 등 다양하다(<表-9> 및 <表-10> 참조). 그러나 반입되는 이들 품목의 양이 小量인 것은 북한의 모든 농산물 생산이 계획생산 체제로 되어 있는데다가, 그 優先順位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 데 주어져 식량자급 위주로 생산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반출할 만한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사전계획이 없는 우발적인 무역거래는 북한과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반출승인 금액은 79,479천불이었는데 농수산물물은 2,701천불로 3.4%를 점하고 있다. 搬出承認額 대비 搬出額은 반출승인금액의 55.4%인 44,039천불로서, 반입비율 81.5%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表-8> 참조). 이 중 농수산물물은 1,683천불이 반출되어 반출승인금액 2,651천불의 63.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출승인된 품목은 쌀 5,000톤, 마늘 5,000톤, 양파 500톤, 마른김 1,450속, 냉동오징어 100톤이었으나, 쌀 5,000천톤과 마늘 1,000톤, 마른김 1,126속, 냉동오징어 100톤만이 반출되었다(<表-11> 참조). 그러나 쌀 5,000톤에 대한 대응품이 아직 반입되지 않고 있으며, 받았다는 의사표시조차 없는 상황이다. 마늘도 1992년도의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수매물량 중 5,000톤을 북한산 메밀과 물물교환 계약을 맺었으나 1차로 1,000톤을 반출한 후 바로 대응품이 반입되지 않아 우리측도 잔여물량은 보내

20) 通關基準이나 본 연구에서는 民族內部間の 去來라는 관점에서 通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 하였음.

지 않았는데, 대용품은 콩나물콩으로서 1994년 2월 28일까지 반입키로 계약을 변경하였지만 핵문제로 반입이 지연되어 1995년 11월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에 있다.

< 表-7 > 年度別 對北韓 搬入品目 現況

단위 : 천불

년도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타 ²	계
1989	414	174	1094	15073	1311	-	589	18655
1990	4931	392	1599	4529	204	-	623	12278
1991	4600	3053	6619	86046	1588	1672	2144	105722
1992	10435	5085	14579	125416	3683	1248	2417	162863
1993	9674	878	1371	154263	8945	663	2372	178166
1994	12061	2723	1448	136340	18500	954	4272	176298
계 ¹	42115	12305	26710	521667	34231	4537	12417	653982
	(6.4)	(1.9)	(4.1)	(79.8)	(5.2)	(0.7)	(1.9)	(100)
	99969	50539	67606	520012	42576	6429	15225	802356
	(42.1)	(24.3)	(39.5)	(100.3)	(80.3)	(70.5)	(81.5)	(81.5)

주 1. 하단은 1989-1994의 반입승인액과 이에 대한 반입비임.

주 2. 1993년 기타에 전자제품 80천달러 포함.

※ CIF 가격기준이며 () 안은 총액대비 %.

資 料 : 統一院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43호(1995).

< 表-8 > 年度別 對北韓 搬出品目 現況

단위 : 천불

년도	농 수산물	섬유류	전기 전자	기계류	화학 제품	철강재	기 타	계
1989	-	69	-	-	-	-	-	69
1990	-	-	-	1094	83	-	10	1187
1991	1607	25	447	-	3468	-	-	5547
1992	64	496	-	22	7932	1957	92	10563
1993	6	6274	463	-	1096	34	552	8425
1994	151	12856	1	38	1349	243	3610	18248
계 ¹	1828	19720	911	1154	13928	2234	4264	44039
	(4.1)	(44.8)	(2.1)	(2.6)	(31.6)	(5.1)	(9.7)	(100)
	2701	31193	2061	2469	29999	2292	8764	79479
	(67.6)	(63.2)	(44.2)	(46.7)	(46.4)	(97.4)	(48.6)	(55.4)

주 1. 하단은 1989-1994년의 반출승인액과 이에 대한 반입비임.

※ FOB 가격기준이며 ()안은 총액대비 %.

資 料 : 統一院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43호
(1995)

南北間の 교역은 직교역 및 중개인을 통한 間接交易형태나 물물교환 및 구상무역 등의 連繫交易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搬出入 制限承認品目²¹⁾은 신청인이 통일원장관에게 반출입을 신청하면, 통일원장관은 이

21) 統一院 告示 第1995-1號(1995.1.3)는 농림수산부와 협의된 225개(BOP제한품목 78개, 통합공고 제한품목 118개, 조정관세 대상품목 및 수입증가 우려가 많은 품목 29개)품목과 수출입공고상 제한품목 50개등 총 275개(농축산물 223개, 수산물 52개)의 搬入制限承認品目을 고시하고 있음.

< 表-9 > 年度別 對北韓 主要 搬入承認 農林水産物

금액 : M/T, 천불

1992			1993			1994		
품 목	수량	금액	품 목	수량	금액	품 목	수량	금액
한약재	2780	8103	호두	4887	8215	호두	4538	9992
호두	3248	5579	한약재	1955	2879	사과	15000	7320
냉동명태	11500	5072	냉동조기	486	3055	한약재	2101	4430
건고사리	703	3586	건고사리	462	1718	낙화생	5000	3750
냉동조기	630	2384	건고추	300	600	고사리	511	2383
건고추	1000	2000	은행	100	500	로알제리	15	1950
냉동	300	1590	낙화생	500	405	고구마	2071	1068
꿀뱅이살			냉동명태	1000	310	줄기		
냉동	1000	1300	생백합	294	302	냉동명태	5070	1534
꿀뱅이			콩나물콩	500	300	기타		15020
버섯류	122	1244	기타		2092			
잎담배	430	1049						
기타		6200						
계	21713	38107	계	10484	20376	계	34306	47447

※ 기타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량은 산출하지 아니함

資 料 : 統一院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43호, 1995.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품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搬出入 自動承認品目은 신청인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승인결과를 3일 이내에 통일원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表-10 > 年度別 對北韓 主要 搬入 農林水産物

단위 : M/T, 천불

1992			1993			1994		
품 목	수량	금액	품 목	수량	금액	품 목	수량	금액
한약재	1688	4563	한약재	744	2009	호두	6347	6347
냉동명태	7514	2826	호두	2145	3627	한약재	1085	2145
감자	6259	1882	고사리류	424	1653	로알제리	14	1104
호두	1008	1781	건도토리	1510	602	기타		12798
냉장명태	1267	1393	박하기름	69	346			
고사리류	277	811	생백합	220	278			
건도토리	1256	505	냉동명태	627	231			
버섯류	71	461	피울무	205	229			
냉동갈치	160	375	버섯류	39	185			
박하기름	33	118	냉장명태	132	130			
냉동홍어	30	105	원목(CBM)	1012	112			
기타		700	녹두	150	112			
			기타		763			
계	19563	15520	계	7277	10277	계	7446	22394

資 料 : 統一院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43호, 1995.

전자의 경우 통일원장관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시장

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별 소관국과 반입허용물량, 반입가격, 계약방식과 수송경로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 후²²⁾, 이를 통일원장관

< 表-11 > 年度別 對北韓 搬出承認 및 搬出 農水産物

단위 : 톤, 천불

구 분	1991			1992			1993		
	품목	수 량	금액	품목	수 량	금액	품 목	수 량	금액
승인품목	쌀	5000	1750	마늘	5000	350	마른김	1450	속 6
				양파	500	35			
반출품목	쌀	5000	1607	마늘	1000	64	마른김	1126	속 6

※ 1) 1994년 반출실적 : 콩기름 50톤(36천불), 감귤 10톤(18천불),
냉동오징어 100톤(97천불).

2) 1995년 9월에는 쌀 45,020톤(67,935천불)이 무상지원 형태로 반
출됨.

資 料 : 統一院

에게 통보한다. 참고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북한
산농산물의 실질적인 반입창구인 農水産物流通公社가 북한으로부터 직
반입 또는 인수한 물품은 <表-12>와 같다.

22) 漢藥材의 경우를 예를 들면, 관계부처인 農林水産部에서 설정한 반
입 가능 품목과 반입한도량에 부합해야 하고, 수입신고 대상품목인 경우
는 韓國醫藥品輸出入協會의 추천을 경유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반입후에도 동 協會長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만 임의로 판매할
수가 있고, 특히 고율관세 부과품목인 건강·의이인·산약 등은 반입원가에
적정수수료를 부가하여 정부투자기관인 農水産物流通公社에 인도케 하
여 공사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는 것 등이다.

< 表-12 > 農水産物流通公社가 直搬入 또는 引受한 北韓物品

단위 : 톤, 원

연도	업체명	품목	수량	금액 (불)	반입가	인수가 (A)	판매가 (B)	비고
1990	현대종합 상사	감자	10171	3230474	2322065	2329382	3671494	직반입
1991	삼성물산	감자	1065	282225	216171	231768	282671	직반입
	현대종합	감자	2580	771420	585893	591834	957220	직반입
	상사			405000	306636	332169	630150	인 수
	동양제과	땅콩	300					
1992	(주)대우	율무	102	114374	89531	77589	78868	인 수
	하나로인	감자	442	141400	116698	116698	166514	인 수
	터내서날							
1993	한중경제 교역(주)	율무	102	113919	96586	84825	88364	인 수
	우익산업	녹두	150	112200	98452	106467	401208	인 수
1994	한국낙화 생조합	땅콩	523	449780	371099	402922	1005956	인 수
1995	한국낙화 생조합	땅콩	1463	1170558	970660	1052637	판매중	인 수
	해양	메밀	475	167200	146967	159201	370300	인 수
	승보	팥	199	89572	87389	95175	판매중	인 수
	승보	녹두	297	133740	124765	135915	862522	인 수
	조선농산	팥	862	559470	430400	429254	판매중	직반입
	물총회사							
	코렉스	참깨	89	129170	112386	122358		
	무역							
	계		18820	7870502	6075698	6268194		

※ 1) 1995년 12월말 기준임.

2) 판매가(B)와 인수가(A)의 차액은 전액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으로 적립

資 料 : 農水產物流通公社 국영무역부, 1995. 12.

3. 3國間의 農產物 交易推移에 대한 展望

1) 韓中間 農產物 交易 展望

최근 몇년간 中國産 農產物은 사회적으로 이중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저급품 또는 식품안전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자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어 물가안정이나 국내 축산업은 물론 식품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中間의 農產物 交易은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리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中國은 농산물 수출에 대한 自律規制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농산물의 대부분은 한국의 축산업발전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조절될 수 있으며, 현재의 수입 비중은 70%가 넘는다. 결국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1/4정도에 지나지 않는 一部 品目때문에 중국산 농산물은 필요 이상의 부정적 시각에서 투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중국에게는 물론 韓中間의 우호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품목들은 한약재, 당면, 고사리, 복숭아 통조림, 표고버섯, 도토리, 은행, 매주, 토끼고기 등으로 수입액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 시장이 넓지 못하

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중국산 농산물이 범람하는 것과는 같은 느낌을 주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彈力關稅制度를 적용하여 고사리, 표고버섯, 무말랭이, 미꾸라지, 골뱅이 통조림, 매주, 도토리, 이쑤시개 등의 關稅를 최고 100%까지 인상하고, 原產地表示制의 강화, 産業被害救濟制度의 활용, 動植物檢疫制度의 보완 등 輸入規制 措置를 強化한 결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는데, 1991년에는 수입증가율이 전년대비 97%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1992년에는 전년대비 31.2%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關稅引上과 動植物 檢疫의 強化, 不合格品에 대한 廢棄 및 返送措置의 強化로 한중간 교역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대한국 수출액의 25% 정도에 지나지 않은 이들 30여개 품목에 대한 輸出自律規制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通商摩擦을 완화시키고 自國商品의 인식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輸出自律規制에 의한 수출감소가 중국의 전체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정도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국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통상마찰 해소로 전체 교역규모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은 인식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農産物 輸入國으로서 주수입선인 중국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평가와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WTO 가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1-2년 사이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²³⁾ 중국이

23) 중국의 WTO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1986년 중국이 GATT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장한 4가지 기본원칙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약술하면 ①중국의 GATT 가입은 신규가입이 아닌 원체약국의 지위회복이어야 함 ②중국은 개도국의 지위로 GATT에 복귀되어야 함 ③중국의 각종무역규제는 경제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야 함 ④중국에 대한 일체의 무역차별은 무차별원칙에 의거 폐지되어야 함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서방국가들은 ①중국의

WTO에 가입하면 한국과 같은 WTO회원국의 자격으로 교역에 있어서 無差別原則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輸入制限措置 등에 있어 한국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은 UR 협상에 따라 주요 농림수산물을 개방해야 할 입장이고, 이들 품목 가운데는 곡물류나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밀감 등 주요 농축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의 수입개방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농산물 수입선으로서의 중국의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국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70% 이상이 축산업 발전과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고 대부분의 중국 농산물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 미국 등 기타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전환된 것들이다. 따라서 수입이 무조건 한국농업에 해롭다는 시각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原料農産物 또는 不足農産物을 확보하고 공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中國 農産物 市場에 대한 情報分析과 投資²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GATT/WTO 가입은 신규가입이어야 하고 ②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지위부여는 곤란하며 ③중국측의 각종 교역장해는 신속히 제거되어야 하고 ④그 기간중 상대국에는 특별긴급 수입제한조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중국이 특히 ①항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중국측의 입장에서 볼 때 1947년 GATT 출범 당시 원채약국이었던 점은 차치하고 ①항이 통과될 경우에는 무차별적 최혜국(MFN)대우가 자동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년 미국의회의 승인으로 MFN을 연장받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서헌제, “中國의 GATT/WTO 加入協商의 進行과 爭點”, 『中國研究』, 1995 봄., pp.8-9).

24) 海外資源開發事業法에 의한 중국현지의 農業綜合開發計劃에의 참여도 식량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한편 1993년도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91억불이었는데, 한국은 12억 2천만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94년에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이미 100억불을 넘어섰다. 1993년 농림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34.6백불로 전년도보다 158% 증가하였고, 수입은 1055.0백만불로 전년도보다는 2.3% 감소되었기는 하나 전체 교역규모에서 매년 黑字基調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국 농림수산물교역정책의 입지를 한층 더 좁히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²⁵⁾

2) 南北韓間 農産物 交易 展望

南北韓間 經濟協力の 기본목표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統一韓國 경제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經濟的 福祉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남북한 경험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 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經濟統合의 실현과 남북한의 同質性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物資交流를 시작으로 하여 經濟協力, 人的交流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南北交流를 추진해야 하고,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相互主權과 명분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간의 경제수준의 차이로 工產品 交易의 추진에는 아직도 여러

25) 한중간 농산물교역에 있어서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 콩, 수수, 조 등 勞動集約的인 農産物은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資本 및 技術集約的인 高附加價值 農産物, 農業資材産業, 食品加工産業 등은 한국이 전문화하여 輸出産業 내지는 輸入代替産業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가지 제약이 따르나 기후와 풍토가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한 異質性이 작은 農産物의 交易은 현재로서도 그 실현과 확대발전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農産物交易은 경제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고 국민의 基礎食品의 교역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相互 補完的인 품목의 교역은 南北關係 改善에도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北韓과의 農産物 交易狀況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북한에서 반입할 만한 농산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⁶⁾

북한은 철저한 計劃生産과 計劃輸出을 시행하고 있고,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生産計劃 優先順位를 식량생산에 먼저 배분하고, 다음으로 채소생산 및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특용작물, 양잠 등에 배분한다. 이와 같이 식량생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한국측이 요구하는 품목, 즉, 쌀, 녹두, 메밀, 콩 등 雜穀類는 극히 제한적으로 생산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쌀을 수출하고 대신 量이 많은 밀가루를 수입해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中國으로부터 지원받은 쌀을 수출하여 밀가루와 교환한 것도 추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이 만성적인 생산부족으로 매년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당한 量의 特用作物을 재배하여 한국으로 搬出하고, 대신 한국의 쌀, 보리 등을 搬入해가는 것도 바람직한 농산물 교역이 될 수 있다. 이 때 한국은 북한에서 生産可能한 品目を 사전에 우선적으로 북한

26) 이에 대한 근거로는 현재 搬入되고 있는 품목들을 볼 때 고사리, 도토리, 한약재 등 대부분 勞動力을 이용해서 採取한 林産物들로서 실제로 논밭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4-5년간 북한의 主交易國인 구소련연방, 중국, 홍콩, 일본 등에 穀類나 雜穀類의 수출실적은 거의 없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搬入 承認한 品目は 고추, 팥, 감자, 땅콩, 메밀 등 다양하였지만 실제로 搬入된 품목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의 計劃生産에 반영시키고 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경우 상호 보완적 교역이 가능해 진다.

한편 남북한 농산물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契約生産을 통한 교역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계약생산은 단순한 교역차원이 아닌 生産分野의 協力을 병행한 교역으로서, 현재 非農業分野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이미 성사되어 실시되고 있는 임가공 형태의 경제협력 방식과 유사한 교역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국에 비해 밭 면적이 두 배나 많은 북한의 밭작물에 경우에 가능한데, 한국의 만성적 부족 농산물(밭작물)의 소요량을 북한의 연간 농산물 생산계획에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품목과 물량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이 때 북한의 생산여건을 감안해야 함은 물론이다. 契約生産은 地理的 近接性에서 오는 수송비 및 부대비용 절감과 국민의 기호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강한 이점이 있다.²⁷⁾ 앞으로 統一前段階의 南北韓 經濟共同體 형성을 위해서도 이 방식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계약생산에 의한 남북한간의 농산물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다음 단계로서 북한에서 계약생산된 물량을 일시반입이 아닌 현지보관을 위해 생산단지 또는 항구 인근에 저장시설을 위한 合作建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계약재배로 일시에 대량생산·출하됨으로써 부패·변질성이 큰 품목(예를 들면 감자)의 경우, 현지에 전분공장을 합작 건설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에 희망한 건강식품 및 과일쥬스 가공공장, 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우리가 건설해 줌으로써 상호간의 신뢰증진과 경제교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7) 계약생산 방식은 현재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에 거의 합의 단계에서 核問題로 연기된 방식임.

아울러 남북한간의 교역은 현재의 間接交易 方式에서 直交易 方式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決済方式도 가능한 硬貨決済 方式이 바람직하다(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구상무역도 가능). 교역 농산물의 가격결정은 국내가격 수준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免稅되는 關稅相當額 범위에서 우대를 해 주는 것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농가수취가격 이내의 수준까지도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계약생산시 농산물 가격을 남한의 농가수매가격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과 국내 농가수취가격의 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북한농가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의 교역이 無關稅²⁸⁾이다 보니 최근 중국산 농산물이 북한산으로 偽裝搬入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搬出入 制限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南北韓間の 直交易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政府의 北韓 經濟關聯資料를 積極 公開하여 기업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대북한 교역 가능품목 발굴 및 대북 거래선 확보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 南北韓間の 交易은 民族間内部去來로 인정되어 관세법에 의한 관세부과 및 수입 부과금이 면제됨(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제 26조 참조).

IV. 韓中間, 南北韓間의 農業協力方案

1. 3國間 農産物交易의 問題點

1) 韓中間 農産物 交易의 問題點

한국은 1980년대 중반의 국제수지 흑자기조에서 최근에는 큰 폭의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²⁹⁾ 최근 몇 년간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되고 있기는 하나, 국제수지 균형유지 문제가 한국경제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수지 적자의 주요인 중의 하나가 農林水産物 輸入에 의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2년도의 43억불에서 199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9% 증가한 51억불, 1994년도에는 57억불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농림수산물 수입 증가 추세와 함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1994년도 대중국 농림수산부문 무역수지 적자는 11억불로서, 전체 농림수산부문 무역수지 적자 56억 7천불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문의 무역수지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輸入自由化 品目들은 수입업자, 수입량, 수입시기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입관리에 많은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산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수입을 하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에는 상품의 유사성, 큰 가격차, 지역적 근접성에 따른 밀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입관리상의 어려움

29) 최근의 국제수지 적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도 96억불, 1992년도 51억불, 1994년도 63억불임.

은 더욱 크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국내생산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 산업전체 또는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에는 소량 또는 소액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도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특정 생산자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또한 市勢差益을 노린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됨으로써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는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워 유통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국내산과 혼합되어 판매되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생산자들은 이러한 流通秩序만 바로잡혀도 品質差別化로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일부 가격차가 큰 품목들(예 : 참깨)은 밀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분별한 밀수입은 食品安全度檢査 및 감독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밀수입은 病蟲害 流入에도 무방비한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2) 南北韓間 農産物 交易의 問題點

남북한간의 교역이 1988년의 「7.7 宣言」과 基本合意書 및 附屬合意書의 발효에 따라 확대·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대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巨示的 觀點에서의 經濟外的 要因에 의한 경제협력 추진의 부진과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 미흡, 그리고 민간기업간 展示的 過當競爭의 노출 등을 들 수 있다.

농산물 교역에서는 지금까지의 남북한 상호교역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농림수산물의 교역에서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만한 잉여 농산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생산 위주의 계

획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요구하는 품목인 콩, 팥, 녹두, 메밀 등 잡곡류를 대외적으로 수출할 만한 여유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교역에 앞서 북한의 농업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떠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교역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농산물 교역형태는 1992년의 경우 남북교역규모(승인기준)가 2억불이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남북간 직교역을 공식 인정하려 하지 않고 간접교역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⁰⁾ 초창기의 남북교역은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였으나 점차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사를 통한 간접 교역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書類上 會社(Paper Company)를 통한 간접교역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수입자유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업체들이 북한산농산물을 無稅로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하락 등,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더구나 북한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반입업체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정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가 크게 문란해질 수도 있다.³¹⁾ 또한 국내 수입업자들의 속성을 고려할 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산 또는 제3국

30) 이러한 간접교역의 이익은 결국 남북한보다도 홍콩, 중국 등 제 3국의 仲介商에 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

31) 偽裝搬入의 우려는 북한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확인조항이 없기 때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원산지확인은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협의없이 시행)인데, 정부는 品目別 搬入對策을 수립하여 시행하느라 부심하고 있음. 그러나 반입승인에 있어 정부부처간의 이견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統一院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차원에서 국내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승인하려는 입장인데 반해, 農林水産部는 무관세혜택으로 중국산이 위장반입될 경우 야기될 국내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직교역 또는 직수송의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임.

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³²⁾ 더구나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위장반입의 가능성이 크고, 북한산의 경우는 식물검역규제가 없기 때문에 병충해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동식물 방역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점들이다.

농산물 교역의 決濟方式에 있어서 북한이 외화부족 때문에 硬貨決濟보다는 과거부터 求價貿易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남북교역의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반출된 쌀과 마늘의 대용품이 북한으로 부터 일부만 반입되고, 계약된 잔여물량에 대한 교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구상무역 조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3國間 協力增大와 各國의 利益

1) 3國間 農業協力の 必要成

한국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100배나 되는 광활한 국토³³⁾와 12억 인구로 구성된 거대한 中國經濟는 商品市場으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輸出商品 生産基地로서의 개발가능성

32) 북한은 상품을 남한으로 반출함에 있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제3국의 상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출할 동기가 부여된 것과 다름없다. 남한에 수요가 존재하고 북한은 이를 충족시킬 만한 충분한 공급능력이 없을 때 이러한 방식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물론 북한이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내수를 충당하고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남한으로 반출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제 3국의 상품이 북한지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반입되는 것은 동식물검역, 식품위생, 국내 시장 교란 등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南北韓 農業部門交易 및 協力方案 研究』, 1994. 12., p.102.)

33) 중국의 국토면적 : 9,561천km² (한국 : 99천km²)

등 經濟的 側面에서의 補完關係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北韓 또한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등 잠재력이 있어 북한과의 상호보완성 있는 상품의 교류는 南北韓間에 상호경쟁·협력하는 競爭的 共存關係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은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 이전에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부문부터의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南北韓 經濟統合의 실현과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韓中間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한사회의 개방과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일종의 압력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南北韓과 東西軸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교류 협력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몽골 등 東北亞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한국경제의 활동반경이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³⁴⁾ 따라서 東北亞의 經濟協力은 우리에게 市場開拓과 資源調達이라는 양대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南北統一을 위한 與件造成에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것으로 본다.³⁵⁾

北韓의 입장은 정권 교체의 과도기에 민심 안정을 위해 남북한간의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체제붕괴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현재로서는 南北經協을 적극 수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방하고 협력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34) 同旨, 金雲根, 前掲書, p.88.

35) 同旨, 柳莊熙, "東北亞 經濟協力과 豆滿江地域開發事業", 『北韓研究』, 1995 봄., p.21.

北韓은 아직도 여전히 위험한 투자대상³⁶⁾이지만, 동북아 경제협력이 南北韓間의 경제협력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統一費用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남북한간에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통일을 앞당길 수가 있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⁷⁾ 따라서 앞으로 한국·중국·북한 3국간의 농업협력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2) 3國間 農業協력이 各國에 주는 利益

가. 韓國의 利益

산업화를 향해 달려온 한국이 GNP나 수출역량 등에 있어서 후발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輸出主導型 공업화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食糧自給能力을 喪失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27.6%(1994년 잠정치)라는 것은 세계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식량이 武器化될 경우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화가 성숙되어 오는 동안 우리의 耕作可能한 農地比率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를 다시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쌀의 자급도 계속되는 농지의 감소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그리 안심할 수준이 아니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다.³⁸⁾ 1995년의 대북 쌀지원도 우리가 쌀이 남아서가 아니라 동포애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대비하여 食糧을 安定的으로 確保하는 일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동북아

36) 북한은 求償貿易제도를 이용하여 먼저 우리의 물품을 인수한 후에 대용품을 보내지 아니하고 버티는 수법을 이용함.

37) 同旨, 柳莊熙, 前揭論文, pp.22-23.

38) 金雲根, 『쌀 需給展望과 政策課題』,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95.11.12.

권인 중국 및 북한과의 농업협력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며 유익하다.

지난 시절 중국은 세계적인 식량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켜 왔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중국내의 식량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에는 개발가능한 방대한 지역이 산재해 있고, 기후와 토양이 우리와 유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농업개발과 확보만 가능하다면 비록 식량무기화 시기가 도래되더라도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으며, 품종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으므로 국민적 거부감도 작다. 또한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식량가격의 결정요인중의 하나인 수송비 측면에서도 미·주·유럽·남미 등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한편 우리의 앞선 자본과 농업기술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농업을 개발해 주는 대신에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農資材産業이나 食品加工産業을 중국에 진출시킬 수가 있고,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한 각종 농업관련산업의 수출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다. 식량확보 차원이 아닌 경제적측면에서 볼 때에도 중국과의 농업협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이처럼 다양하다.

북한과의 농업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식량 중에서도 雜穀類(발작물)의 安定的인 確保가 可能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앞의 제 3장에서 보았듯이 남북한은 耕地構造가 相互補充的으로 되어 있는데, 논은 남한이 북한보다 2배 이상 많고, 밭은 북한이 남한보다 약 2배 많다.³⁹⁾ 즉, 남한으로서는 경작은 거의 포기하였으나 수요는 그리 줄어 들지 아니 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잡곡류를 북한으로부터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록

39) 南北韓 耕地面積의 比較 :

主體農法の 폐해와 국토의 비효율적인 개발로 농업이 피폐화되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농업기술과 지원으로 계약생산 등의 방법으로 북한농업을 개발할 수 있다면 잡곡류의 확보는 무난하다. 더구나 북한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은 국민적 거부감이 전혀 없으며 수송비 부문에서의 부담도 없다.

나. 中國의 利益

중국은 12억 인구 중 9억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일인당 0.42ha의 零細農이다. 중국공산당이 토지분배로써 중국의 공산화에 성공한 이후 몇차례 토지의 集團化를 시도해 보았지만, 소유와 분배에 관한 공산주의의 내재적 한계성에 기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이 1978년 이후의 改革開放政策과 농촌의 生産責任制에 의해서 어느 정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왔으나, 방대한 농업종사인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치중되고 있어서 중국의 농촌은 다른 나라의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993年 11月 第14期 3中全會에서 채택된 「社會主義 市場經濟 建設의 若干의 問題에 관한 決定」에서와 같이 금세기말까지 농업을 새로운 토대위에 올려 세우고 농민생활을 溫飽에서 小康수준에 도달시키겠다

구 분	북 한 (A)	남 한 (B)	대 비 (A/B)
총경지면적(천ha)	1974	2070	95.4
- 논	614	1315	46.7
- 밭	1360	755	180.1

※ 1992년 기준이며 밭면적은 과수원, 뽕밭 등이 포함된 것임.

資 料 : 農林水産部 농수산통계실, 統一院 정보분석실.

는 정부의 약속은 실현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이 중국의 농업부문에 대해 투자한다고 할 때에 중국이 환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⁴⁰⁾ 중국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한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중국의 농업을 개발하는 것은 중국의 기본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다.北韓의 利益

북한은 前近代의 農法과 協同農場의 失敗로 농업이 피폐화되어 식량난을 겪어 왔는데, 최근에는 그동안 도움을 받아 온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몰락과 國際社會에서의 不信 등으로 인해 외국의 원조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주로 中國과의 求償貿易에 의해 부족한 식량을 보충해 왔는데 중국이 경화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식량부족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농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투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도 이제는 우리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의 耕地構造가 발위주로서 논위주인 남한과는 相互補完의인데다가 남한처럼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이 가능해지리라고 본다. 북한이 남한과의 농업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남한으로부터의 쌀의 확보가 손쉬워진다는 점과 남한의 앞선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경우 북한농업의 급속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로 잡곡류가 주품목이 되겠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契約生産으로 남한의 영농지원을 받

40) 지금의 중국이 농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타 산업부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도의 고부가가치농업이 아닌 우리 한국 정도의 農業生産技術과 농자재·비료 등의 農業關聯産業이다.

고 북한은 토지와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의 농촌합작개발이 북한에 주는 이익은 크리라고 생각한다.

3. 3國間 農業協力方案 및 對策

앞절에서 살펴본 3국간의 농산물 교역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韓中間의 農產物 交易에 있어서의 問題點으로는 (1) 계속하여 누적되고 있는 貿易收支赤字의 改善方案 (2) 密輸의 根絶對策 (3) 食品安全度 및 病蟲害 防止對策 등이 지적되고, 南北韓間의 農產物 交易에 있어서는 (1) 對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에 있어서의 一貫性 부족 (2) 北韓에 대한 農業關聯情報 부족 (3) 北韓의 지나친 間接交易의 고집 (4) 제3국 농산물의 僞裝搬入 可能性 상존 (5) 植物檢疫規制의 不備로 병충해 및 방역상의 문제점 농후 등이 지적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국간의 경제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보다 巨視的인 관점에서 政府部處間에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民間業體間의 지나친 競爭을 방지하여야 하며, 상대국에 대한 正確한 農業情報를 확보해야 하고, 原產地表示 및 植物檢疫規制 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對北交易에 있어서는 제 3국에 이익을 제공하는 間接交易보다는 과감한 直接交易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절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3국간의 보다 구체적인 농업협력방안 및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1) 韓中間 農業協力 方案

가. 協力可能分野 檢討

1995년 11월 13일 中國의 江澤民 主席이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

문하였는데⁴¹⁾, 이는 韓中協力에 있어 새로운 章을 연 역사적인 사건이다. 江주석의 방한이 지니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이제 경제적인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교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쉽게 전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한중 농림수산물분야 교류 및 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도 우리 농림수산업의 構造調整과 相互補完의 關係가 維持되는 방향에서 중국과의 농림수산물분야 교역 및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추진과 함께 우리 농림수산물도 高附加價值生産品目 중심으로 分業化, 專門化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콩·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면서, 특히 중국 각지역의 지질과 토양, 식생활의 차이, 식품수급 불균형 등을 감안하여 보완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海外投資를 통한 合作事業 추진과 제3국 輸出擴大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조만간 中國의 WTO 加入이 예상되고 있고, UR協商에서도 중국이 옵저버(Observer)로 참가한 점을 감안, 중국에 대하여는 MFN원칙에 의한 대우가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교류단체를 설

41) 금번 訪韓한 중국측 인사는 100명이 넘는 隨行員團의 성격이다. 이번 수행원단의 특징은 경제분야 관료가 많은 점인데, 주요면면을 보면 부총리 겸 외교부장 錢其琛, 중앙선전부장 丁關根,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 王忠禹, 대외경제합작부장 吳儀, 화학공업부장 顧秀蓮, 중앙광공청 주임 曾慶紅,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王維澄, 외교부 부부장 唐家瑋 등으로서, 江주석의 이번 방한이 經濟外交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번 수행원단에는 지난해 10월 李鵬총리 방한때와는 달리 기업가는 없고 經濟 Technocrat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국일보』, 1995. 11. 13.)

치하여 점진적인 농림수산물 교역제도 개선,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고 經協을 강화하여 中國의 農業開發事業에 적극 참여하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촉진을 위하여는 KOTRA, 農水産物流通公社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물 시장정보 및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시장개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協力増大方案

앞에서와 같은 韓中間의 농업협력가능분야와 관련하여 상호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

㉞ 産業被害救済制度⁴²⁾ 改善

농림수산물의 경우 GATT의 BOP卒業으로 수입자유화율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중요 품목의 경우도 1997년까지 수입자유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농림수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産業被害救済制度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가 通商産業部の 貿易委員會에 소속되어 있어 주로 工産品에 그 비중이 두어지고 있고, 신청준비과정의 어려움, 절차의 복잡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⁴³⁾

㉟ 檢疫制度의 改善

42) UR 농산물협상분야에서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 Guard)와 GATT 제19조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의 시행을 합의하였는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조치와 수출국의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조치의 2가지 형태로 대별됨.

43) SSG와 SG의 적용은 통관실적에 관한 통계의 신속성이 없이는 실시의 효과가 반감됨(農水産物流通公社, 『國營貿易實施에 따른 主要農産物輸入管理對策』, 1994. 9., p.102)

우리의 수입 농림수산물에 대한 검역근거법은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간 협조가 어렵다. 따라서 檢疫業務를 綜合的으로 調整하고 迅速한 對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單一法規를 제정함과 아울러 농림수산물부 산하에 동·식물검역소, 수산물 검사소를 총괄할 수 있는 검역기관을 설치하여 수입 농림수산물 검역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농림수산물의 검역(병충해 및 식품안전성)은 保健福祉部보다는 農林水産部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검역인력의 보강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위생검사대상 농수축산물의 범위를 확대⁴⁴⁾하고, 검역강화 방법의 일환으로서 수입업자에게나 검역기관에게 공히 편리한 綠色카드제⁴⁵⁾의 도입 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 流通制度 改善

수입농산물이 通關 이후 원산지표시의 실종으로 국내농산물과 혼합되어 판매되거나 국내산으로 僞裝販賣되는 등 不正流通행위가 자행되는 등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있다. 또한, 통관후 국내유통에 있어서 品質의 安全性을 보증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미흡한 실정이며 包裝 規格(크기·단위·표시 등)설정도 아직 미비하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는 (1) 수입관련자료 및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2)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취급업자의 稅務처리를 철저히 管理하여야 하며 (3) 僞裝流通防止를 위한 原產地表示制를 強化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수입관련자료의 제공 및 국내산

44) 기존 잔류농약기준은 58개 품목에 대해 38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항생물질 및 성장촉몬은 3개품목에 40종이 지정되어 있음.

45) 수입업자가 通關전에 수입농산물의 原產地 栽培 중의 농약사용내역 등을 검역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로써, 수출국과 수입국의 二重檢疫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가 있고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해 주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檢疫制度가 先進化되어 상대국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선진국에서와 같은 農水産物倉庫에 관한 法令 등을 제정하여 정부지원창고에의 수입농산물 과다보관을 방지하고, 商工資源部의 貿易委員會 및 農水産物貿易協議會⁴⁶⁾ 등과 연계하여 綜合的인 輸入農産物管理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令의 보완, 關稅法 및 稅法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개정 보완⁴⁷⁾, 수입농산물의 경품·광고·선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㉔ 調查研究 強化

한편 중국과의 바람직한 농업협력을 위해서는 政府가 앞장서서 북방 농림수산정책, 무역정책동향 등을 파악하여 대북방 농림수산분야 협력 사업 등을 하는 정부, 민간기업, 단체 등에 대한 情報提供 및 諮問活動을 계속하여 강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 주중 한국대사관에는 농무관이 파견되어 앞으로 확대될 한중 농림수산부문 협력 분야를 전담 조정하고 있다.⁴⁸⁾

2) 南北韓間 農業協力方案

가. 協力可能分野 檢討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 남한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46) 정부의 농산물수입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1995년 5월에 農水産物流通公社에 설치된 농수산물 수출입관련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운용 등을 검토하고 정책건의하는 民間諮問機構. 동 협의회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무역업계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곡·원예특작·축산·수산·임산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음.

47) 예를 들면, 농산물 중량세제의 도입, 고가농산물 휴대품에 관한 규정, 농산물 반덤핑에 관한 규정,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의 보완 등을 들 수 있다.

48)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은 「北方農林水産業研究센터」를 설치하여 중국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각종 정보와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기관이 중국에 조사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북한은 노동과 자원면에서 각각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산업구조의 차이를 통한 各部門別協力 可能性을 살펴보면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 등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거의 동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후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부 품종의 특산품이 있고 또 생산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품종에 한하여 水平的인 貿易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못하며, 그것도 남한측의 일방적인 구매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와 자원구조 그리고 수출입 무역구조를 비교해 볼 때 남북한은 相互補完的 經濟構造를 갖고 있어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쌍방이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農林水産部門의 경우 北韓이 제3국으로 輸出하는 농림수산물 가운데 南韓이 필요로 하는 品目은 일단 南韓의 搬入形態로 교역의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수출하는 농림수산물은 수산물(대구, 연어, 송어, 게, 대합, 넙치, 가자미, 갯지렁이, 바지락, 성게, 청어, 정어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농산물로는 쌀, 사과, 토마토, 양배추, 전분, 잎담배, 한약재, 송이버섯, 채소, 생사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다. 특히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규모가 크고 품목이 다양하여 농산물에 비해 남북한간 교류 가능성이 큰 부문이다. 그밖에 남한의 만성적 초과수요 품목이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녹두, 팥 등의 잡곡류와 고사리, 한약재, 호두, 명태 등 기존의 반입 품목들도 교류 가능 품목이다.

北韓이 주로 輸入하고 있는 농림수산물은 쌀, 양파, 마늘, 김, 냉동야채, 견과류, 소맥, 면화, 대두유, 육류, 옥수수, 일부 어류, 담배, 조제식품, 종자용 및 의약용 식물 등인데, 南韓은 이들 품목 중 옥수수, 어류, 한약재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을 北韓으로 공급할 수가 있으며 특히 담배, 조제식품 및 쌀의 경우에 있어서는 技術水準과 生産量에

서 충분한 供給能力을 가지고 있다.

農業用 資材 중 비료의 경우에 있어서 북한은 그리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비 수준을 남한 또는 기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높이게 될 경우 비료(특히 복합비료)의 자체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농약을 고르게 수입하고 있는데 농약의 주수입선인 日本은 농약의 가격이 비싸 남한산농약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農機械 수입실적은 현재 거의 없으나 남한이 북한을 포함한 제3국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운기 등 소형 농기계의 경우는 남한의 일방적인 공급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북한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을 외화획득을 위한 농림수산물의 일방적인 공급형태를 취하게 되리라고 본다.

나. 協力増大方案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앞에서도 수차 언급하였지만 다음 여섯 가지방안으로 귀결된다.

㉞ 南北韓의 特性에 맞는 農林水産物 供給體系 構想

산악지형인 북한은 남한에 비해 밭작물(특히 고냉지작물)과 果實類 생산에 있어 水稻作보다 유리하고, 팔·녹두·참깨·고추 등 勞動集約的 特用作物의 생산이 밀·보리 등 主穀生産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이러한 특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농림수산물 교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契約栽培와 注文生産에 의한 교역이 효과적이다.

㉟ 契約栽培의 推進

계약재배는 남북한간의 품종, 기술 및 인적교류 효과를 동시에 유발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한의 특용작물의 대부분이 남한에서는 공급감소와 수요증가로 초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물들인데, 이들에 대한 주문생산 또는 계약재배는 북한지역에서의 생산면적을 증가시켜 작부체계의 조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계약생산은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장기적 농산물 수급에도 대비하게 해 주는 이익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農水産物流通公社가 추진하려고 하는 韓中間의 契約栽培⁴⁹⁾와 같은 실험적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남한으로서는 통일후를 대비하여, 북한의 수입농산물인 종자용 산동물, 가공식품, 밀가루, 담배 등의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쌀, 보리 등 주곡의 생산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價格誘引 提供

北韓産 農林水産物의 搬入에 있어서 남한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남한의 가격을 적용하고, 南韓 農林水産物의 北韓 搬出시에는 북한의 가격기준을 적용하되, 그 差額은 南北協力基金 등에서 補填하여 북한에게 가격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통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1993년도 남북한의 농림수산물 교역규모는 1천 2백만불 정도로서, 이 차액을 보전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때 점차로 보조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면 재정적 부담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본다.

㊦ 南北韓 去來를 위한 基盤施設 擴充 提供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는 농림수산물 중 수산물, 채소, 과일 등

49) 契約栽培의 전제조건은 우리의 기호에 부합하는 품종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農水産物流通公社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품종이 산출되고 있는 中國 山東省 益都産 고추의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1996-'97년 2,000톤, 이후 점차 증량 계획), 이외에도 美國콩나물콩의 계약재배 타당성도 연구 중임(1996년 5,000톤 계획).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품목들은 물론 기타 품목들도 특성에 맞는 保管施設 및 運送手段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流通體系 및 下部構造가 완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의 남북교역활성화에 대비하여 북한에 대한 貯藏施設, 運送手段 등의 투자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남한지역에 南北連結 運送網을 확충하고, 휴전선 인접지역에 物流센터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投資計劃의 樹立 및 投資活性化를 위한 各種 制度의 整備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民間投資者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南北韓間の 投資保護協定 등 필요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북한측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㉔ 去來方式의 多樣化

북한은 여전히 위험한 투자대상이므로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直交易·間接交易, 硬貨決済·求償貿易(공산품 포함), 契約栽培·注文生産 등 교역방식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초기의 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은 商業保險이나 政府次元의 保證 등의 방안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㉕ 北韓의 農業用資材 産業 投資 促進

북한의 農機械 및 肥料産業은 이미 1950-60년대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있어서 남한의 기술지원이나 시설대체 내지는 복구지원 요청의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한편으로 北韓의 農業開發을 間接的으로 支援해 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 시설 보수, 시설확충 등 北韓의 投資需要에 對備하여 자재산업부문의 북한진출을 위한 投資情報 提供, 危險負擔에 대한 積極的인 保證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컨소시엄 구성 등에 대한 政府의 仲裁活動 및 制度의 마련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3國間 農業協力方案의 새로운 模索

韓國·中國·北韓 3국간의 농업협력이 각국에 주는 이익은 전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중국과는 한중수교 이후 합작 또는 합자 형태의 활발한 직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農業開發部門에 있어서도 여러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⁵⁰⁾, 북한과는 아직도 주로 공산품에 있어서 제 3국을 통한 임가공 위주의 간접교역 또는 직교역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농업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교역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부문에 있어서 제도적인 정비를 하였는데⁵¹⁾, 향후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에 의해 남북간의 농업협력도 활발해질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본항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韓國·中國·北韓 3국의 농업현실에 기초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韓中 양국간의 합작농업개발사업과 향후 예상되는 南北韓間 및 3國間の 농업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韓中合作農業開發事業

㉔ 事例：中國黑龍江省 三江平原 農業綜合開發事業(韓中合資)

韓國의 大陸綜合開發株式會社와 中國의 黑龍江省農業開發建設總公司는 1990년 1월30일 중국 흑룡강성내에 위치한 三江平原(속칭 滿洲)의

50) 中國 黑龍江省 三江平原의 韓中合作農業開發事業 등.

51) 대표적인 법률 또는 지침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8. 1), 남북협력기금법(1990. 8. 1),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원, 1990. 9.25),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통일원, 1994.12. 1), 국내 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원고시, 1994.12. 1),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원고시, 1995. 6.28) 등이 있다.

38,000ha에 이르는 토지를 농장으로 개발하여 장기 공동운영기로 하는 合作意向書를 체결하고, 1992년 1월 合資會社 설립계약을 체결한 후, 1992년 4월 중국국내법에 의거 투자비율 50대50의 합자회사인 黑龍江三江平原農業開發有限公司를 설립하고, 1994년 7월 농장개발기공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업개발사업에 착수했다. 韓中間의 대표적인 농업협력사업으로 평가되는 이 계획은 富錦市頭興地區에 종사원 500여명의 頭興農場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반반씩 출자하는 자본금 8,951천불과, 한국이 80% 중국이 20%를 조달하는 장기차입금 18,756천불 및 단기차입금 837천불 등 총28,544천불(1995년 8월 기준)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주요품목으로는 개간 초기에 3년간은 대두(콩) 2년간은 소맥(밀)을 생산하고, 개간후기에는 윤작형태로 1년간은 대두 2년간은 소맥을 생산할 계획이며 목표수량은 대두 2,250Kg/ha 소맥 4,200Kg/ha이다. 大陸綜合開發株式會社의 자료에 의하면 대두와 소맥의 생산단가는 대두가 톤당 86.7불, 소맥이 톤당 51.4불이고, 판매단가는 대두가 톤당 228.1불, 소맥이 157.8불이다.⁵²⁾

이 농장은 中國 國營農場의 장점 및 현지의 낮은 노동임금을 활용하고, 선진적 현대화 기계농장을 건설함으로써 최대수익을 및 생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장은 總場과 2개의 分場으로 구성되고, 分場은 다시 5-7개의 作業區로 구성되는데, 인원은 총장을 중심으로 집중관리하며 POOL제로 가동한다. 또한 생산력제고를 위해 작업구 단위로 목표수량을 달성할 경우에는 增收量의 약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頭興農場의 생산품 판매계획으로는 원칙적으로 중국 국내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합자회사의 최대이익 확보차원에서 국제시장가격이 중국 국내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수출할 수 있도록 전체생산량의 50%에 대

52) 大陸綜合開發株式會社, 「事業現況」, 1995.8.

한 輸出權限을 확보했다.⁵³⁾

향후 이 농장에서는 새로운 農副產品의 研究開發로 앞에서의 대두와 소맥 외에도 각종 경제작물, 농·수·축산물(부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1995년 5,979천불, 1996년 6,832천불, 1997년 6,782천불 등 총 19,593천불의 추가 소요자금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의 연차별 생산계획과 판매계획은 <表-13> 및 <表-14>와 같다.

이 사업은 장차 東北 3省(인구 1억), 韓半島(인구 7천만) 및 沿海州(인구 2억)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중국정부가 농업개발을 최우선과제로 사고 있는 시기에 중국농업개발에 한국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콩과 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부라도 海外에서 自體生産하여 그 절반을 수입하게 됨으로써 非常時의 食糧確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장에 소요되는 농기계, 비료, 농약 및 비닐 등의 農資材는 한국산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부대효과도 있으며,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남북한간에 철도가 연결될 경우에는 富錦에서 서울까지 직접수송이 가능하여 수송비가 현저하게 절감될 것이다.

53) 中國 國內法上 合資會社에서 필요한 外貨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生産原資材 購入 및 元利金 償還에 필요한 外화획득을 위하여 한국 또는 제3국에 일정량을 수출할 계획인데, 수출은 中國 糧油進出口總公司와 협의하여 北京 對外經濟貿易部の 허가를 얻은 후, 품종·수량·수출가격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함.

< 表-13 > 中國 黑龍江省 富錦市 頭興農場의 年次別生産計劃
(면적 : ha, 수량 : kg/ha, 생산량 : M/T)

년차	대 두			소 맥			계
	면 적	수 량	생산량	면 적	수 량	생산량	
1	10000	1500	15000	0	2250	0	15000
2	18680	1500	28020	3300	2250	7425	35445
3	27100	1500	40650	3300	2250	7425	48075
4	25070	1725	43246	5330	2250	11993	55238
5	25070	1875	47006	5330	2250	11993	58999
6	25070	2025	50767	5330	2625	13991	64758
7	25070	2025	50767	5330	2625	13991	64758
8	25070	2025	50767	5330	2775	14791	65558
9	25070	2025	56408	5330	3000	15990	72398
10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11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12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13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14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15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16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17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18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19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20-70	25070	2025	56408	5330	3750	19988	76395

資 料 : 大陸綜合開發株式會社, 『事業現況』, 1995. 8.

< 表-14 > 中國 黑龍江省 富錦市 頭興農場의 年次別販賣計劃
단위 : M/T

年度別	品目別	生産量	販賣量	國家別 販賣比率(%)	
				中國	韓國및第3國
1996	대두 소맥	15000 -	15000 -	50 -	50 -
	소계	15000	15000	50	50
1997	대두 소맥	28020 7425	28020 7425	50 50	50 50
	소계	35445	35445	50	50
1998	대두 소맥	40650 7425	40650 7425	50 50	50 50
	소계	48246	48246	50	50
1999	대두 소맥	43246 11993	43246 11993	50 50	50 50
	소계	55238	55238	50	50
2000	대두 소맥	47006 11993	47006 11993	50 50	50 50
	소계	58999	58999	50	50
2001-2002	대두 소맥	50767 13991	50767 13991	50 50	50 50
	소계	64758	64758	50	50
2003	대두 소맥	50767 14791	50767 14791	50 50	50 50
	소계	65558	65558	50	50
2004	대두 소맥	56408 15990	56408 15990	50 50	50 50
	소계	72398	72398	50	50
2005이후	대두 소맥	56408 19988	56408 19988	50 50	50 50
	소계	76395	76395	50	50

資 料 : 大陸綜合開發株式會社, 『事業現況』, 1995. 8.

나. 南北韓合作農業開發의 方向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합작형태의 농업개발사업이 없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經濟的要請과 合營法에 의해 나진·선봉지구가 개방된 이후, 개방의 효과가 북한전역으로 확산되고 모든 부문에 있어서 교류가 활발하게 될 경우 남북한간의 농업부문의 협력이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질성이 없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북한과의 농업협력에 있어서는 북한의 協同農場을 이용한 契約生産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품목으로는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雜穀類가 가장 좋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우선 北方協力事業機關으로 지정된 農水產物流通公社가 북한과의 契約生産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⁵⁴⁾, 그 성과에 따라 民間企業을 통한 合作農場 운영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契約生産된 농산물을 전량 남한으로 반입하고, 대금결제에는 우리도 북한이 선호하는 求償貿易방식의 대용품을 반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북한의 외화부족현상을 감안할 때 북한은 우리측에게 硬貨決濟를 고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방법의 실현성은 회박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契約生産방식이 성공할 경우에는 나진·선봉 등 經濟特區의

54) 農水產物流通公社는 정부로부터 北方協力事業機關으로 지정되어 1996년 229백만 원의 사업비(주로 인건비와 경비)를 지원받았는데, 현재 農水產物流通公社가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북한의 대표적인 무역상사의 하나인 광명성총회사와 農產物直交易 등에 관한 基本合意書의 교환을 추진 중이며, 북한 농업의 일반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용역의뢰하여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위한 기초 자료를 발간할 계획임.

저장 및 가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우리가 참여하는 쪽으로 농업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韓·中·北合作農業開發의 方向

韓國·中國·北韓 3국이 참여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頭滿江地域開發事業(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⁵⁵⁾이 있는데, 이를 원용하여 중국과 북한의 국경 인접지역에 중국의 토지와 북한의 노동력 및 한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된 農業開發部門에 있어서의 3국간의 協力可能性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합작개발은 중국에게는 국토개발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북한에게는 외화획득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는 식량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데, 설령 이익의 분배를 단순화하여 3국의 배분을 동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각국에 주는 이익은 클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3국간의 經協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3국 정부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의 食糧確保方案으로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55) TRADP는 東北亞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이 지역의 무역·투자·기술 개발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두만강지역을 세계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동북아 최초의 政府間協力機構인데, TRADP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計劃管理委員會(PMC :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에는 1994년말 현재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 등 5개국이 정회원으로서 가입하고 있으며, 일본, ADB, ESCAP, UNIDO 등은 Observer로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자세한 사항은 金益洙, “頭滿江地域開發事業의 推進現況과 各國의 立場”, 『北韓研究』, 1995 봄. 참조).

V. 結 論

韓中間의 農産物 交易은 한중수교 이후 최근 몇년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中國 農産物の 輸入比重은 전농산물 수입의 20%를 차지할 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앞으로 對中國 農産物交易은 지역적 근접성과 수송비 절감 등의 이점에 의해 계속하여 늘어날 것이며, 우리의 기존 농산물 수입선이 중국으로 대폭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수입국으로서의 한국은 輸入安全裝置로서 原產地表示制, 彈力關稅制度, 動植物의 檢疫 및 衛生檢査 強化, 消費者에 대한 弘報 強化 등의 시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산과 混合되어 販賣되거나 국산으로 偽裝販賣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은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며, 不良農産物 輸出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하루바삐 수출농산물에 대한 品質高級化와 輸出自律規制制度를 시행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는데, 만일 중국이 이러한 노력을 원만히 진행할 경우, 이는 韓中 兩國間의 友好增進과 通商發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수입국인 한국은 농산물 수입이 무조건 한국에 해롭다는 시각 보다는 국제화, 전문화의 방향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原料農産物 또는 不足農産物을 確保하고 供給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中國 農産物市場에 대한 정확한 情報分析과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投資가 필요하다. 중국은 최근 산업화 정책으로 인하여 農業輕視 풍조가 만연하고 離農人口가 增加하고 있으며 國內農産物 需給不足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도 상승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南北韓間에는 아직도 冷戰狀態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최근 北美國의 協商妥結, 金日成의 사망에 따른 改革開放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는 점차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한중수교와 함께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동무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변화와 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東北亞地域의 정치 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3국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 국가와는 상호 보완성 있는 상품의 교류는 물론 相互 競爭·協力하는 競爭的 共存關係로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역에 있어서는 통일이전에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우선 가능한 부문부터의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經濟統合의 실현과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은 物資交流를 시작으로 하여 經濟協力, 人的交流 등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相互主權과 名分을 尊重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農産物交易은 경제교류의 가장 基本的인 段階이며 一般國民의 基礎食品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교역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 근접성에서 오는 수송비 및 부대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우기 남북한의 소비생활 수준의 차이로 공산품 교역에는 제약이 따르나, 기후·풍토가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한 異質性이 없는 농산물 교역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한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북한에서 搬入할 만한 농산물은 별로 없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생산 체제인데다가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資源을 食糧生産에 優先配分함으로써 우리측이 요구하는 품목의 생산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농산물교역은 단순한 교역차원이 아닌, 生産分野의 協力を 병행한 契約生産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契約生産은 북한의 우수하고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생산여건을 감안하여 북한의 年間生産計劃에 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품목과 물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제약생산된 물량의 현지보관을 위해 북한의 생산단지 또는 인근 항구에 貯藏施設을 갖추 수도 있고, 부패 변질성이 큰 품목의 경우에는 加工工場의 合作建設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農産物 交易政策이 소극적,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되어 왔다는 비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WTO라는 世界貿易秩序 속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상대국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관행에 대하여는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는 외에도, 식량확보를 위한 시장개척에도 더 한층 투자하는 보다 積極的이고 攻勢的인 農業政策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 김동현, 『우리나라 農産物 輸入開放化에 따른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1994.
- 김동희, "韓國農政의 새 挑戰과 對應課題", 『農村經濟研究』, 1994. 12.
- 김봉구, "韓半島 統一을 對備한 農業構造改編에 관한 研究", 『亞細亞研究』, 고려대학교, 1993. 1.
- 김상태, 『우리나라 主要 農産物의 輸入構造 變化 分析』, 성균관대 석사, 1994.
- 김성훈, "國際化, 開放化時代의 韓國農業 發展方向", 『새로운 世界經濟秩序와 우리 農業의 進路』,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1995. 2.
- , "北韓의 食糧事情과 南北間 農業交流協力 增進 方案", 『北韓農業研究』, 1994. 12.
- 김운근, "南北韓間 韓中間의 農産物交易現況과 展望", 『農村經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94. 12.
- , 『쌀 需給展望과 政策課題』,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95. 11.
- 김익수, "頭滿江地域開發事業의 推進現況과 各國의 立場" 『北韓研究』, 1995 봄.
- 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2., 1985., 1991., 1995.
- , 『農林水産 統計年譜』, 1994.
- , 『農業通商消息』, 1990-1994.
- , 『通商資料』, 1990-1994.
- , 국제농업국, 『國際農業消息』 47호, 1995. 12.
- , 국제농업국, 『農林水産物 輸出入動向』, 1995. 11.

農林水産部 농업협력 통상관실, "農林水産物 國別 通商資料", 1994.

_____, "農林水産物 通商資料", 1994.

農水産物流通公社, "中國農産物貿易핸드북", 1994.

_____, 「業務便覽」, 1995.

_____, 「國營貿易實施에 따른 主要農産物 輸入管理 對策」, 1994. 9.

大陸綜合開發株式會社, 「事業現況」, 1995. 8.

大統領諮問21世紀委員會, 「21世紀 韓國經濟의 展望과 主要對應課題 (最終報告書)」, 1991. 11.

大韓貿易振興公社, 「中國/臺灣의 GATT 加入과 우리에의 影響」, 1994.

대륙연구소, 「北韓研究」, 1995 봄.

서헌재, "中國의 GATT/WTO 加入協商의 進行과 爭點", 「中國研究」, 1995 봄.

심재성, 이병화, 왕성우, 박상수, 「國際化時代에 있어 韓國農業의 進路」, 농림수산정보센터, 1994. 6.

유장희, "東北亞 經濟協力과 頭滿江地域開發事業", 「北韓研究」, 1995 봄.

최세균, "農産物 輸入先으로서의 中國의 役割變化", 「농수산물유통 조사월보」, 농수산물유통공사1993. 5.

統一院 교류협력국, 「月刊南北交流協力動向」 제43호(199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南北韓 農業部門 交易 및 協力方案 研究(김운근, 최세균, 김형모)」, 1994. 12.

_____,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協商白書」, 1994.

_____,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시안)」, 1991.

_____, 「韓·中 農林水産分野 協力方案」, 1992.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 『UR 妥結에 따른 農畜產物市場開放의 波及影響分析』, 1993. 12.

_____, 『WTO 體制下的 農產物 輸入管理方案에 관한 研究(이재욱 외)』, 1994. 12.

허승욱, 『北韓 農業構造와 南北韓 交流·協力에 관한 研究』, 단국대 석사, 1995.